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65호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상향하여 정하고, 관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전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사전협의, 의견수렴 및 안내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

아.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관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자. 인력 확보,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출입자 통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차.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및 열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제22조)

카.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교육의무,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6조)

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3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97
----------	-----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백승규·권성현·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김상현·김우진·김현일·문순규·박해정·서명일
삼영석·오은옥·이우환·이원주·이종화·이찬수
전홍표·정순욱·진형익·한상석·한은정 의원(23명)

1. 제안이유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상향하여 정하고, 관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현행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전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사전협의, 의견수렴 및 안내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
- 아.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관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자. 인력 확보,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출입자 통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 차.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및 열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2조)
- 카.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교육의무,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6조)
- 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3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방법용·시설물 관리·교통정보수집·법규위반 단속·재난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통합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며 설치 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구축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공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할 것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1. 방법
2. 쓰레기 투기방지
3. 주차관리
4. 교통정보 수집
5. 불법 주정차 단속
6. 재난·재해예방
7.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

제7조(사전협의) 제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영 제24조제2항에

서 정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관련 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업무 전체를 위탁할 수는 없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

우에는 수탁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관제센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연계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해야 한다.

⑤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계 시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영상정보관제센터의 통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실시간 관제
3. 재난·범죄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유관기관과의 긴급상황 시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제의 범위)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해야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처해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해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를 해야하는 범위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법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

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상남도교육감에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제 전담요원은 설치 목적별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경찰서,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이를 출입 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 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해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 방문출입자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할 때 시장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제20조(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21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 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6. 그 밖에 긴급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41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교육의무)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수탁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해야 하며, 30일 경과 시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과 장소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

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창원중부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 부서장
3. 창원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 부서장
4.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5.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민간 전문가 또는 공무원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

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016. 9. 29.>
2. 삭제 <2016. 9. 29.>
3. 삭제 <2016. 9.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④ 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